

# 강원대학교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 규정

제정 2011. 9. 14. 규칙 제1247호    개정 2020. 3. 3. 규칙 제1763호  
개정 2015. 5. 7. 규칙 제1467호    개정 2020. 11. 2. 규칙 제1811호  
개정 2018. 8. 17. 규칙 제1670호    개정 2021. 8. 4. 규칙 제1855호  
개정 2019. 10. 31. 규칙 제1724호    개정 2026. 3. 1. 규칙 제213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대학교 학칙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학·석사 연계과정(이하 “연계과정” 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계과정 지원자와 연계과정을 이수중인 학생(이하 “연계과정 학생” 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9.10.31.)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은 강원대학교 학칙, 학사운영규정 및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수업연한)**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5년 이상으로 하며, 학위과정별 최소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학위과정 : 3.5년(7개 학기)

다만, 건축학과는 4.5년(9개 학기), 약학과 및 수의학과는 5.5년(11개 학기) (개정 2026.3.1.)

2. 석사학위과정 : 1.5년(3개 학기)

**제5조(지원자격 및 절차)** ① 연계과정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1. 학사과정 5개 학기(5년제는 7개 학기, 6년제는 9개학기)이상 7개 학기 이하(5년제는 9개 학기, 6년제는 11개 학기) 등록한 자로서 별표 1에 해당하는 학점을 취득한 자(개정 2018.8.17., 2019.10.31., 2026.3.1.)

가. <삭제 2018.8.17.>

나. <삭제 2018.8.17.>

다. <삭제 2018.8.17.>

라. <삭제 2018.8.17.>

마. <삭제 2018.8.17.>

바. <삭제 2018.8.17.>

사. <삭제 2018.8.17.>

2.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3.2이상인 자 (개정 2019.10.31., 2021.8.4.)
3. 소속 학과(부)장 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복수지원은 할 수 없다. (개정 2019.10.31.)

② 전 1호의 수료 학기를 산정할 때 수의학과는 수의예과, 치의학과는 치의예과, 약학과는 입학 전 수학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3.1.)

③ 연계과정 학과는 학사과정의 전공분야와 동일한 분야에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학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연계과정 지원자는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1.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학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4. 전학년 성적 증명서 1부.

**제6조(모집인원 등)** ① 연계과정 선발인원은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입학정원의 50%범위 이내로 하며, 정원에 미달할 때는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으로 모집한다. (개정 2021.8.4.)

② 모집요강은 각 학기말 30일전에 공고한다.

**제7조(선발시기 및 선발방법)** ① 연계과정 학생은 매학기 1회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10.31.)

②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수강신청 및 학점이수)** ① 연계과정 학생은 학사학위과정 중 대학원 전공과목 이수를 위해 매학기 6학점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6학점이수 후 추가 신청은 불가하다. (개정 2019.10.31. 2026.3.1)

② 연계과정 학생은 학사과정에서 소속 학과(부)장의 수강지도를 받아 대학원 전공과목 중 6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학점은 석사과정으로 인정한다. 다만, 논문연구, 세미나, 연구윤리와논문작성, 대학원 개설 공통과목은 제외한다. (개정 2019.10.31., 2026.3.1)

③ 연계과정 중도 포기자가 이수한 대학원 전공과목 이수학점은 6학점까지 학부의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9조(연계과정 운영 등)** ① 대학원 전공주임은 연계과정 학생이 입학한 후

3개월 이내에 대학원과정의 지도교수를 배정한다. (개정 2019.10.31.)

② 연계과정 학생은 학사과정 및 석사과정의 학과(전공)를 변경할 수 없다. 단, 전공분야와 동일한 분야는 예외로 한다.(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9.10.31., 2020.3.3., 2026.3.1.)

③ 학과(부)장 또는 대학원 전공주임은 연계과정 학생을 위한 학·석사공통 과목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0.31.)

**제10조(졸업)** ① 연계과정 학생의 학사과정 졸업학점은 소속 학과(부)의 총 졸업학점에서 자유선택 6학점을 감한 학점으로 하며, 석사과정 수료학점은 학칙 제104조의 석사과정 수료학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졸업학점중 자유선택이 없는 학과는 전공선택에서 감한다. (개정 2019.10.31.)

② 연계과정 학생의 학사과정 졸업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31.)

1. 각 대학에서 정한 졸업학점을 충족하고,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3.2이상인 자 (개정 2019.10.31., 2021.8.4.)

2. <삭제 2021.8.4.>

3. 진학예정 대학원 전공과목 6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4. 대학원 입학등록을 필한 자

③ 연계과정 학생은 학사과정 졸업자격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석사과정에 입학한다. (개정 2019.10.31.)

**제11조(연계과정 학생의 대학원 입학 및 수료)** ① 연계과정으로 학부졸업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학원 석사과정에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1. 대학원입학(연계과정)지원서(별지 4호 서식) 1부.

2. 학부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②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대학원 입학 전까지 충족하지 못한 자는 연계과정을 중도 포기한 자로 간주한다. (개정 2019.10.31.)

1. 대학원 등록이전에 연계과정 중도 포기자의 경우 학·석사연계과정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26.3.1.)

2. 연계과정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3. 대학원 전공과목 6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4. 대학원 입학등록을 하지 않은 자

③ 연계과정으로 입학한 자는 석사과정 3학기까지 수료요건을 충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연계과정 중도포기자는 연계과정 선발전 소속 학과(부)의 졸업학점과 수업연한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10.31.>]

**제12조(등록)** ① 연계과정으로 학부졸업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는 대학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연계과정 학생은 학사과정 잔여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③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 후 3학기 내에 수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잔여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연계과정 학생에 대한 특례)** ① 연계과정 학생은 연계과정 학과와 동일한 분야 학사과정의 졸업논문(또는 이와 동등한 졸업시험 등)을 면제한다. 다만, 제11조 제2항에 의거 연계과정을 포기한 자와 제14조 제2항에 의한 학사학위 희망자는 졸업논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31., 2026.3.1.)

② 연계과정 학생은 석사과정의 입학시험을 면제(무시험 특별전형)한다. (개정 2019.10.31.)

③ 연계과정 학생은 석사과정 입학 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0.31.)

④ 연계과정 학생은 학사과정 재학 중 대학원의 각종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9.10.31.)

[제목개정 <2019.10.31.>]

**제14조(학위 수여)** ① 연계과정 학생 학위는 석사과정을 마친 후 학사학위와 석사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개정 2019.10.31.)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대학원위원회와 졸업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8.8.17., 개정 2019.10.31.)

1. 학부 조기 졸업 요건을 충족한 자(신설 2018.8.17.)

2. 석사 1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학부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신설 2018.8.17., 개정 2019.10.31., 2026.3.1.)

③ 제2항에 따른 학사학위 희망자의 신청시기는 학사일정에 따른다. (신설

2019.10.31.)

[제목개정 <2019.10.31.>]

**제15조(사무분장)** 연계과정과 관련한 행정업무 부서는 다음과 같다.

1. 모집전형 총괄 : 춘천연구지원과, 강릉연구지원과, 삼척기획연구지원과, 원주기획연구지원과 (개정 2015.5.7., 2018.8.17., 2020.11.2., 2026.3.1.)
2. 심사 : 해당학과
3. 대학원 등록업무 : 재무과, 강릉행정지원과, 삼척행정지원과, 원주행정시설지원과 (개정 2026.3.1.)
4. 학사관리 전반 : 춘천연구지원과, 강릉연구지원과, 삼척기획연구지원과, 원주기획연구지원과(개정 2015.5.7., 2018.8.17., 2020.11.2., 2026.3.1.)

**제16조(준용규정)** 연계과정 학생이 학사과정 재학할 때는 학부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대학원 재학 중일 때는 대학원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9.10.31.)

**제17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5. 7. 규칙 제146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8. 17. 규칙 제167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0. 31. 규칙 제172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3. 3. 규칙 제176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1. 2. 규칙 제181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8. 4. 규칙 제185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1항제2호, 제6조제1항, 제1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2  
학년도 1학기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6. 3. 1. 규칙 제2134호)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설 2018.8.17.) (개정 2026.3.1.)

학·석사 연계과정생 지원학기별 이수학점(제5조제1항 관련)

학부(과) 졸업학점	학사과정 이수학기		
	5개 학기	6개 학기	7개 학기
120학점	75학점 이상	90학점 이상	105학점 이상
130학점	82학점 이상	98학점 이상	114학점 이상
136학점	85학점 이상	103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140학점	88학점 이상	106학점 이상	123학점 이상
150학점	94학점 이상	113학점 이상	132학점 이상
159학점	10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160학점	10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170학점(5년제)	(7개 학기) 122학점 이상	(8개 학기) 138학점 이상	(9개 학기) 154학점 이상
232학점(6년제)	(9개 학기) 177학점 이상	(10개 학기) 198학점 이상	(11개 학기) 215학점 이상
238학점(6년제)	(9개 학기)	(10개 학기)	(11개 학기)
	180학점 이상	200학점 이상	219학점 이상